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669 제출연월일 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「어선안전조업법」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「어선안전조업법」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.

4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출입 신고) ① 무역항의 수	제4조(출입 신고) ①		
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			
선장(이하 이 조에서 "선장"이			
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			
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			
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			
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			
할 수 있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4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8조에		
	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		
	<u>는 어선</u>		
4. (생략)	<u>5</u> . (현행 제4호와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